경제 및 고용 동향

◆ 2014년 1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전월대 비로는 0.1% 증가

- 2014년 11월 생산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컴퓨터(9.8%), 기계장비(2.9%), 석 유정제(6.2%) 등에서 증가하고 반도체 및 부품 (-5.6%), 화학제품(-5.7%), 영상음향통신(-19.3%) 등 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함(전월대 비로는 1.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9.8%), 보건·사회복 지(6.7%), 부동산 · 임대(7.9%)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고 도소매(-2.1%), 출판·영상·방 송통신·정보(-3.7%)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 비 2.1% 증가함(전월대비 0.3% 감소)
- 2014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함.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5%), 음식 료품 등 비내구재(-0.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승 용차 등 내구재(7.1%)에서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함(전월대비 1.9% 증가).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특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함(전월대 비 13.1%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 년동월대비 9.6%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 년동월대비 8.6% 감소, 전월대비로는 0.8% 감소함.

- 2014년 11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 모두 전월대비 0.2%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생활물가지수 0.3% 상승)

-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2(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보합이고 전 년동월대비로는 0.8%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2.0%), 음식・숙박(1.7%), 교육(1.6%), 의류・신발(2.2%), 보건(0.9%)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5.1%)과 오락・문화(-0.3%) 등에서는 하락함.
 - 2014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6.76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함(전월 대비로는 0.2%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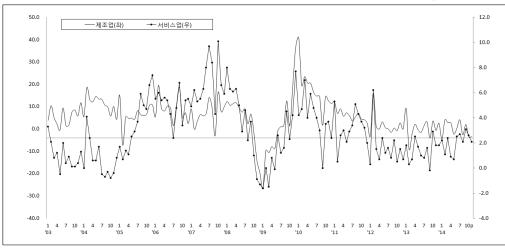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	3/4	11월p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2.1	-1.7	-0.7	0.0	-3.4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9	-1.8	-0.8	0.0	-3.5
생산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0.7	-2.3	-1.0	-0.2	-2.1
87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0.6	-2.8	-1.2	-0.4	-3.2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2.3	-1.7	-0.6	0.1	-0.8
	서비스업 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1.4	0.8	1.7	0.7	2.1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1.2	0.2	1.1	0.7	-1.0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0.1	-15.4	-10.0	-4.7	10.6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2	1.1	1.6	1.4	0.8

-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1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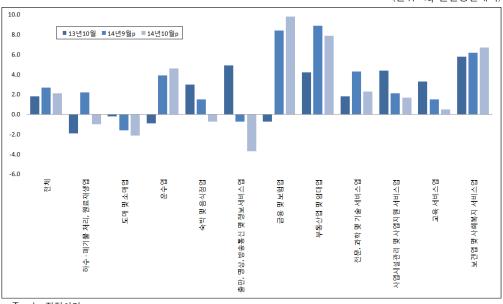


주:10,11월 수치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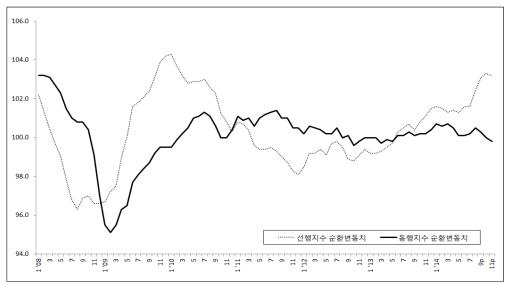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1), 『2014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2014년 취업자 533천 명 증가

- 2014년 경제활동인구는 26,536천 명으로 전년대비 663천 명(2.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387천 명으로 316천 명(2.1%) 증가하였고, 여성은 11,149 천 명으로 347천 명(3.2%) 증가하였음.
- 2014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대비 0.9%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0%)이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고, 여성(51.3%)은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음(그림 4 참조).
- 2014년 고용률은 60.2%로 전년대비 0.7%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대비 0.6%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전년대비 0.7%p 상승하였음.
- 2014년 취업자는 25,599천 명으로 전년대비 533천 명(2.1%)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839천 명으로 전년대비 266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761천 명으로 전년대비 267천 명(2.5%)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4년 실업자는 937천 명으로 전년대비 130천 명(16.1%)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5%로 전년대비 0.4%p 상승함.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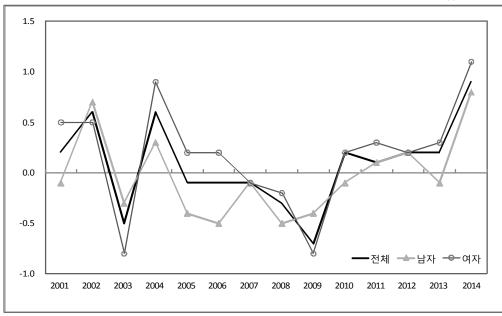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3	4/4분기		2014	4/4분기	
							4/4 ː 기	12월		4/4 ː 기	12월
경 제	활 동 (인 구	24,748 (1.5)	25,099 (1.4)	25,501 (1.6)	25,873 (1.5)	26,078 (2.2)	25,736 (2.4)	26,536 (2.6)	26,622 (2.1)	26,270 (2.1)
참	가	율	61.0	61.1	61.3	61.5	61.7	60.9	62.4	62.4	61.5
취	업	자	23,829 (1.4)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346 (2.2)	24,962 (2.3)	25,599 (2.1)	25,767 (1.7)	25,384 (1.7)
고	용	률	58.7	59.1	59.4	59.5	60.0	59.1	60.2	60.4	59.4
실	업	자	920	855	820	807	733	774	937	854	886
실	업	률	3.7	3.4	3.2	3.1	2.8	3.0	3.5	3.2	3.4
비경	제활동	인구	15,841 (0.9)	15,953 (0.7)	16,081 (0.8)	16,223 (0.9)	16,167 (-0.6)	16,537 (-1.0)	15,977 (-1.5)	16,066 (-0.6)	16,458 (-0.5)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통계청(2015.1),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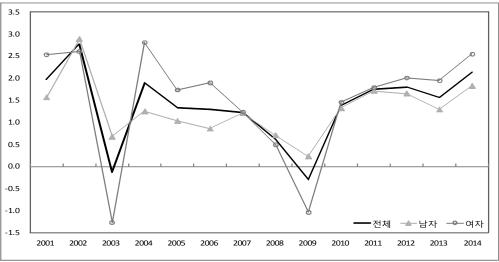
(단위:%p,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48천 명으로 전년대비 50천 명(10.0%)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89천 명으로 전년대비 80천 명(26.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도 3.5%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음.
- 2014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7천 명으로 전년대비 246천 명(-1.5%)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09천 명으로 전년대비 103천 명(-1.9%)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68천 명으로 전년대비 142천 명(-1.3%)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38천 명으로 전년대비 81천 명(-1.9%),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48천 명으로 전년대비 92천 명(-6.0%) 감소한 반면, 구직단념자는 394천 명으로 전년대비 222천 명(129.1%) 증가함.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4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9천 명, 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6천 명, 2.0%), 건설업(42천 명, 2.4%), 제조업 (146천 명, 3.5%)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68천 명, -4.5%), 전기·운수·통신·금 융업(-18천 명, -0.6%)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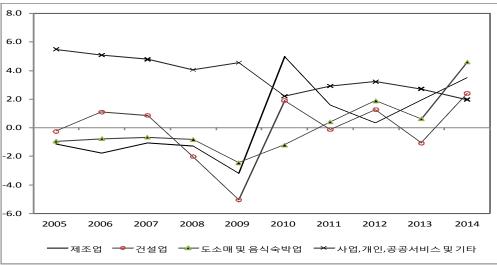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4/4분기		2014	4/4분기	
					4/4 = 7	12월		4/4군기	12월
전 산 업	23,829 (1.4)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346 (2.2)	24,962 (2.3)	25,599 (2.1)	25,767 (1.7)	25,384 (1.7)
농림어업	1,566	1,542	1,528	1,520	1,504	1,167	1,452	1,395	1,072
	(-5.0)	(-1.6)	(-0.9)	(-0.5)	(-1.0)	(-2.3)	(-4.5)	(-7.2)	(-8.1)
제조업	4,028	4,091	4,105	4,184	4,245	4,264	4,330	4,374	4,406
	(5.0)	(1.6)	(0.3)	(1.9)	(1.2)	(2.0)	(3.5)	(3.0)	(3.3)
건설업	1,753	1,751	1,773	1,754	1,783	1,755	1,796	1,854	1,838
	(1.9)	(-0.1)	(1.3)	(-1.1)	(-0.5)	(0.3)	(2.4)	(4.0)	(4.7)
도소매 및 음식·	5,469	5,492	5,595	5,630	5,751	5,799	5,889	5,992	6,033
숙박업	(-1.2)	(0.4)	(1.9)	(0.6)	(2.6)	(3.6)	(4.6)	(4.2)	(4.0)
사업·개인·공공	8,158	8,396	8,668	8,903	8,994	8,894	9,079	9,128	9,000
서비스업 및 기타	(2.2)	(2.9)	(3.2)	(2.7)	(3.6)	(2.7)	(2.0)	(1.5)	(1.2)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34 (2.6)	2,956 (4.3)	2,997 (1.4)	3,059 (2.1)	3,054 (1.9)	3,067 (2.2)	3,041 (-0.6)	3,015 (-1.3)	3,025 (-1.4)

- 주:1)()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5.1),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4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8,743천 명으로 전년대비 548천 명 (3.0%)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857천 명으로 전년대비 15천 명(-0.2%)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156천 명으로 444천 명(3.8%), 임시근로자는 5,032 천 명으로 140천 명(2.9%)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555천 명으로 35천 명 (-2.2%) 감소함.
 - 상용근로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4년에는 임시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652천 명으로 1천 명(0.0%) 증가하였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1,205천 명으로 16천 명(-1.3%)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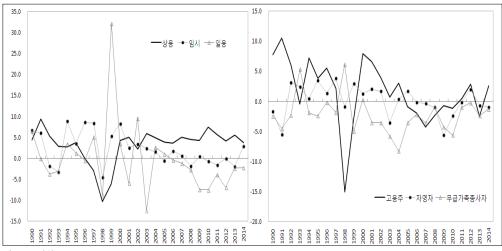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4/4분기	12월	2014	4/4분기	12월
전 체	23,829 (1.4)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346 (2.2)	24,962 (2.3)	25,599 (2.1)	25,767 (1.7)	25,384 (1.7)
비임금근로자	6,858	6,847	6,969	6,872	6,854	6,548	6,857	6,799	6,506
	(-2.7)	(-0.2)	(1.8)	(-1.4)	(-0.9)	(-1.4)	(-0.2)	(-0.8)	(-0.6)
자영업주	5,592	5,594	5,718	5,651	5,618	5,474	5,652	5,625	5,468
	(-2.1)	(0.0)	(2.2)	(-1.2)	(-0.9)	(-1.1)	(0.0)	(0.1)	(-0.1)
무급가족종사자	1,266	1,254	1,251	1,221	1,236	1,074	1,205	1,175	1,038
	(-5.6)	(-1.0)	(-0.2)	(-2.4)	(-0.8)	(-3.0)	(-1.3)	(-4.9)	(-3.3)
임금근로자	16,971 (3.1)	17,397 (2.5)	17,712 (1.8)	18,195 (2.7)	18,492 (3.4)	18,414 (3.7)	18,743 (3.0)	18,968 (2.6)	18,878 (2.5)
상용근로자	10,086	10,661	11,097	11,713	11,925	11,938	12,156	12,280	12,310
	(7.4)	(5.7)	(4.1)	(5.5)	(5.6)	(5.8)	(3.8)	(3.0)	(3.1)
임시근로자	5,068	4,990	4,988	4,892	4,935	4,871	5,032	5,076	5,001
	(-0.7)	(-1.5)	(-0.0)	(-1.9)	(0.0)	(-0.1)	(2.9)	(2.9)	(2.7)
일용근로자	1,817	1,746	1,627	1,590	1,631	1,605	1,555	1,612	1,567
	(-7.5)	(-3.9)	(-6.9)	(-2.3)	(-2.1)	(-0.1)	(-2.2)	(-1.2)	(-2.4)
36시간 미만	3,617	4,534	3,634	4,715	3,395	3,515	3,969	3,659	3,840
	(16.3)	(25.4)	(-19.8)	(29.7)	(5.5)	(5.7)	(-15.8)	(7.8)	(9.3)
36시간 이상	19,839 (-1.0)	19,290 (-2.8)	20,637 (7.0)	19,940 (-3.4)	21,636 (1.7)	21,112 (1.8)	21,220 (6.4)	21,779 (0.7)	21,202 (0.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통계청(2015.1),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4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220천 명으로 1,280천 명(6.4%) 증가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69천 명으로 전년대비 746천 명 (-15.8%) 감소함.

◈ 전 연령에서 실업률 증가

- 2014년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는 15~29세(54천 명), 30~39세(8천 명), 40~49세(19천 명), 50~59세(28천 명), 60세 이상(20천 명)에서 증가함.
 - 2014년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9.0%, 1.0%p), 30~39세(3.1%, 0.1%p), 40~49세(2.2%, 0.2%p), 50~59세(2.2%, 0.3%p)와 60세 이상(2.3%, 0.5%p)에서 상승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중졸 이하(2.6%, 0.4%p), 고졸(4.0%, 0.6%p), 대졸 이상(3.5%, 0.2%p)에서 상승하였음.
- 2014년 전체 실업자 93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 는 64천 명으로 전년대비 11천 명(20.8%),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73천 명으로 119천 명(15.8%) 증가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2013	4/4분기		2014	4/4분기	
					1,12.1	12월		1,12.1	12월
전 체	920 (3.7)	855 (3.4)	820 (3.2)	807 (3.1)	733 (2.8)	774 (3.0)	937 (3.5)	854 (3.2)	886 (3.4)
15~29세	340	320	313	331	328	355	385	350	381
	(8.0)	(7.6)	(7.5)	(8.0)	(7.9)	(8.5)	(9.0)	(8.3)	(9.0)
30~39세	214	202	177	175	155	158	183	164	159
	(3.5)	(3.4)	(3.0)	(3.0)	(2.6)	(2.7)	(3.1)	(2.8)	(2.7)
40~49세	165	145	138	134	114	119	153	146	149
	(2.5)	(2.1)	(2.0)	(2.0)	(1.7)	(1.8)	(2.2)	(2.1)	(2.2)
50~59세	120	110	115	107	88	87	134	136	136
	(2.5)	(2.1)	(2.1)	(1.9)	(1.5)	(1.5)	(2.2)	(2.2)	(2.3)
60세 이상	80	77	77	61	48	54	81	58	62
	(2.8)	(2.6)	(2.4)	(1.8)	(1.4)	(1.7)	(2.3)	(1.6)	(1.8)
중졸 이하	154	133	126	105	84	104	118	96	108
	(3.0)	(2.6)	(2.5)	(2.2)	(1.8)	(2.4)	(2.6)	(2.1)	(2.5)
고졸	420	398	359	347	335	366	416	381	398
	(4.2)	(4.0)	(3.6)	(3.4)	(3.3)	(3.6)	(4.0)	(3.6)	(3.8)
대졸 이상	346	323	335	355	313	304	402	377	380
	(3.6)	(3.2)	(3.2)	(3.3)	(2.8)	(2.8)	(3.5)	(3.3)	(3.3)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46	45	53	49	57	64	54	61
취업유경험 실업자	876	808	775	754	684	717	873	800	825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1),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10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3% 상승

- 2014년 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함.
 - 2014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2.9%), 초과급여(6.6%), 특별급여 (8.3%)가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함.

98_노동리뷰 2015년 2월호

〈표 6〉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	14
		2011	2012	2013	1~10월		1~10월	
					평균	10월	평균	10월
전체 근	로자	2,844	2,995	3,111	3,095	3,001	3,351	3,129
임금총액		(1.0)	(5.3)	(3.9)	(4.1)	(4.0)	(2.3)	(4.3)
	임금총액	3,019	3,178	3,299	3,278	3,185	3,351	3,307
	<u> </u>	(-0.9)	(5.3)	(3.8)	(4.0)	(4.2)	(2.2)	(3.9)
	정액급여	2,341	2,470	2,578	2,566	2,577	2,649	2,652
상용	0-164	(4.8)	(5.5)	(4.4)	(4.5)	(4.3)	(3.2)	(2.9)
근로자	초과급여	179	181	184	184	200	200	213
	포기디어	(-8.4)	(1.0)	(1.7)	(1.5)	(5.5)	(9.0)	(6.6)
	특별급여	498	527	537	527	408	503	441
	국글 ㅂ 어	(-19.3)	(5.8)	(1.8)	(2.5)	(2.8)	(-4.6)	(8.3)
임시・일	일용근로자	1,215	1,293	1,377	1,382	1,421	1,386	1,403
임금총액		(15.1)	(6.4)	(6.5)	(7.8)	(9.5)	(0.3)	(-1.2)
소비자물	ユフレスト 스	104	106	108	107.6	107.8	109.1	109.1
T-IV[돌	121717	(4.0)	(2.2)	(1.2)	(1.3)	(0.9)	(1.4)	(1.2)
실질임금	l증가율	-2.9	3.1	2.6	2.7	3.2	0.9	3.1

주:1)())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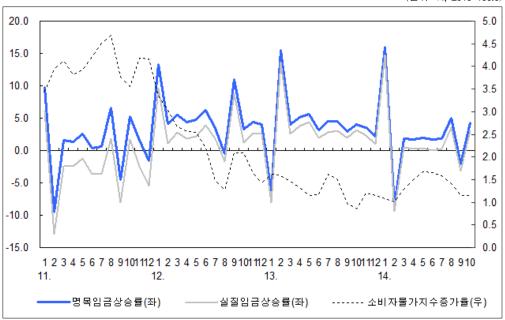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한 해 동안 3%대 초반에 머물다가 10월 현재 2%대로 떨어짐.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2% 하락한 1,403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51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95천 원)대비 2.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동평균 대비 2.2% 상승한 3.351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3.2%)와 초과급여(9.0%)는 전년 동평균 대비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는 4.6% 하락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동평균 대비 0.3% 상승한 1,386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0월 실질임금은 3.1% 상승함.
 -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1% 상승함. 2014년 실질임금상승률은 5개월 연속 0%대였으나 8월 상용 특별급여의 상승에 힘입어 3.5%로 반짝 상승했다 9월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4년 1~10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4년 1~10월 평균 실질임 금 상승률은 0.9% 상승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의 둔화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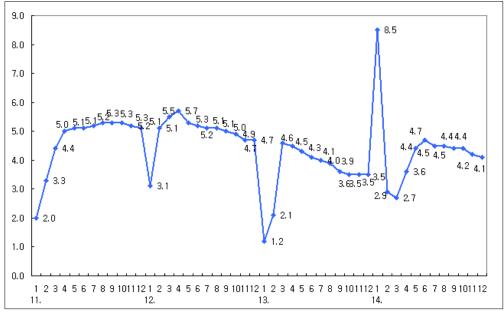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4.1%

- 2014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2013년 12월 인상률(3.5%)에 비해 0.6%p 상승함.
 - 2014년 1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82.5%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임.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10월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 상승

- 2014년 10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폭 확대
 - 2014년 10월 광업(-2.0%) 부문만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가운데 임금이 큰폭으로 상승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1%), 건설업(7.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6.2%), 도매 및 소매업(6.1%), 제조업(5.2%)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10월 평균 광업과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4년 1~10월 평균 임금이 하락한 산업은 광업(-3.0%)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1.2%)으로 나타남.
 - 이외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 동평균 대비 임금이 상승함.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3%), 제조업(3.8%), 건설업(3.0%), 여가관련서비스업(2.9%) 등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4			
	2012	2013	1~10월		1~10월			
			평균	10월	평균	10월		
전 산 업	2,995 (5.3)	3,111 (3.9)	3,095 (4.1)	3,001 (4.0)	3,165 (2.3)	3,129 (4.3)		
광업	3,470 (4.9)	3,557 (2.5)	3,579 (2.4)	3,188 (1.4)	3,472 (-3.0)	3,124 (-2.0)		
제조업	3,221 (6.1)	3,371 (4.7)	3,345 (4.8)	3,258 (4.8)	3,473 (3.8)	3,428 (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5,320 (2.6)	4,532 (2.3)	5,404 (1.6)	4,600 (1.5)		
하수 ·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713 (3.9)	2,677 (3.3)	2,788 (2.8)	2,775 (3.7)		
건설업	2,273 (4.2)	2,414 (6.2)	2,412 (6.4)	2,324 (3.9)	2,484 (3.0)	2,499 (7.5)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138 (1.8)	3,030 (0.7)	3,176 (1.2)	3,216 (6.1)		
운수업	2,589 (8.2)	2,732 (5.5)	2,718 (6.0)	2,792 (10.3)	2,770 (1.9)	2,885 (3.3)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761 (1.4)	1,775 (3.9)	1,772 (0.6)	1,805 (1.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3,934 (2.8)	3,710 (3.1)	3,888 (-1.2)	3,822 (3.0)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046 (1.6)	4,654 (-1.3)	5,166 (2.4)	4,824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250 (3.4)	2,300 (9.3)	2,302 (2.3)	2,309 (0.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186 (3.4)	4,130 (2.5)	4,367 (4.3)	4,507 (9.1)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872 (5.5)	1,856 (3.5)	1,907 (1.9)	1,936 (4.3)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330 (5.6)	3,042 (7.4)	3,413 (2.5)	3,152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668 (2.8)	2,660 (4.4)	2,674 (0.2)	2,679 (0.7)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303 (6.0)	2,222 (6.1)	2,370 (2.9)	2,250 (1.3)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20 (0.2)	2,151 (-0.6)	2,230 (0.4)	2,284 (6.2)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 2014년 10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4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대 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상승폭이 큼.
 - 2014년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93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상승에 그침. 이는 초과급여(5.3%)와 특별급여(8.9%)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 상승폭 둔화에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6.7%)는 물론 초과급여 (16.4%), 특별급여(20.2%)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5% 상승함.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	14
		2012	2013	1~10월		1~10월	
				평균	10월	평균	10월
	상용임금총액	3,178(5.3)	3,299(3.8)	3,278(4.2)	3,185(4.0)	3,351(2.2)	3,307(3.9)
	정액급여	2,470(5.5)	2,578(4.4)	2,567(4.3)	2,577(4.5)	2,649(3.2)	2,652(2.9)
전 규모 (5인 이상)	초과급여	181 (1.0)	184(1.7)	184(5.5)	200(1.5)	200(9.0)	213(6.6)
(02 10)	특별급여	527(5.8)	537(1.8)	527(2.8)	408(2.5)	503(-4.6)	441 (8.3)
	비상용임금총액	1,293(6.4)	1,377(6.5)	1,382(9.5)	1,421(7.8)	1,386(0.3)	1,403(-1.2)
	상용임금총액	2,834(5.9)	2,938(3.7)	2,919(4.2)	2,838(3.9)	2,982(2.2)	2,935(3.4)
	정액급여	2,333(5.9)	2,433(4.3)	2,424(4.2)	2,434(4.4)	2,493(2.8)	2,501(2.8)
5~299인	초과급여	156(3.5)	160(3.0)	160(8.0)	172(3.5)	172(6.9)	181 (5.3)
	특별급여	345(7.7)	345 (-0.3)	334(0.9)	232(0.7)	317(-5.1)	253(8.9)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7.0)	1,397(10.1)	1,448(8.3)	1,388(-0.6)	1,411(-2.5)
	상용임금총액	4,424(3.5)	4,583(3.6)	4,555(3.2)	4,403(3.6)	4,781 (5.0)	4,864(10.5)
	정액급여	2,965(4.3)	3,093(4.3)	3,075(3.9)	3,079(4.5)	3,249(5.6)	3,284(6.7)
300인 이상	초과급여	275 (-3.9)	270 (-1.6)	266 (-0.5)	299(-3.3)	311 (16.9)	348(16.4)
, 5	특별급여	1,185(3.4)	1,220(3.0)	1,213(2.2)	1,025(3.1)	1,221(0.6)	1,232(20.2)
	비상용임금총액	1,209(0.1)	1,219(0.8)	1,222(1.9)	1,167(1.6)	1,363(11.5)	1,330(14.0)

주:1)()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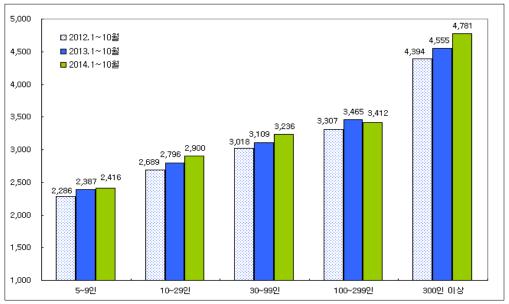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0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승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하락함.
 - 2014년 10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4.0% 상승한 1,330천 원인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은 2.5% 하락한 1,411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2,982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2.2% 상승에 불과함. 이는 특별급여(-5.1%)의 하락과 정액급여의 상승폭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81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됨(5.0%). 이는 초과급여의 상승(16.9%)과 정액급여의 상승폭 확대에 기 인함.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천 원)



주:1~10월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 동평균 대비 0.6% 하락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1.5% 상승함.

◈ 2014년 10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가 동일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2014년 10월 근로시간은 175.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
 - 2014년 10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75.1시간)은 전년동월(175.6 시간)에 비해 0.5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였고, 비상 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도 11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7% 감소함.
- 2014년 1~10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0.8% 감소함.
 - 2014년 1~10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8시간으로 전 년동평균(172.1시간)에 비해 1.3시간 감소함.
 - 2014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평균 대비 0.6% 감소한 176.4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5.0% 감소한 117.1시간을 기록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시간,%)

					20	14
	2012	2013	1~10월 평균		1~10월 평균	
			1 102 82	10월	1 102 82	10월
전체근로시간	174.3 (-1.1)	172.6 (-1.0)	172.1 (-1.3)	175.6 (1.0)	170.8 (-0.8)	175.1 (-0.3)
상용총근로시간	179.9 (-1.2)	178.1 (-1.0)	177.4 (-1.4)	181.6 (0.9)	176.4 (-0.6)	181.1 (-0.3)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 (-0.8)	165.6 (-1.0)	165.0 (-1.3)	168.2 (0.8)	163.4 (-1.0)	167.8 (-0.2)
상용초과근로시간	12.8 (-5.9)	12.5 (-2.3)	12.4 (-3.1)	13.4 (2.3)	12.9 (4.0)	13.3 (-0.7)
비상용근로시간	122.3 (-0.2)	122.5 (0.2)	123.2 (1.7)	124.0 (3.9)	117.1 (-5.0)	116.9 (-5.7)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0월 근로시간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 등에서 감소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20)14
	2012	2013	1~10월		1~10월	
			평균	10월	평균	10월
전 산 업	174.3(-1.1)	172.6(-1.0)	172.1 (-1.3)	175.6(1.0)	170.8(-0.8)	175.1 (-0.3)
광업	185.3(-0.9)	180.6(-2.5)	179.5(-3.3)	182.3(-0.5)	178.6(-0.5)	183.7(0.8)
제조업	186.4(-2.2)	185.0(-0.8)	184.0(-1.2)	189.7(2.2)	184.8(0.4)	189.7(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3.2(-1.1)	165.7(-2.8)	169.5(-2.1)	172.3(4.0)
하수 •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 (-0.8)	182.0(-1.5)	182.0(-1.5)	186.4(1.4)	177.7(-2.4)	183.5(-1.6)
건설업	152.5 (-0.9)	152.7(0.1)	152.9(0.9)	155.0(2.0)	148.2(-3.1)	152.5(-1.6)
도매 및 소매업	174.5 (-0.3)	173.4(-0.6)	172.7(-0.9)	175.7(0.6)	171.6(-0.6)	176.2(0.3)
운수업	181.7(0.1)	177.8(-2.1)	177.3(-2.6)	178.5(-2.4)	172.5(-2.7)	175.9(-1.5)
숙박 및 음식점업	186.6(0.2)	177.3(-5.0)	176.1 (-6.1)	179.6(-3.1)	174.2(-1.1)	179.1 (-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 (-0.5)	162.5(-1.0)	165.4(1.2)	161.7(-0.5)	164.7(-0.4)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2.0(-1.1)	165.3(-0.5)	162.9(0.6)	167.0(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 (-0.4)	191.5(-1.0)	191.5(-1.2)	193.5(1.0)	189.2(-1.2)	194.2(0.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3.3(-1.3)	167.5(1.3)	162.4(-0.6)	167.1 (-0.2)
사업서비스업	173.1 (0.6)	172.3(-0.5)	171.7(-1.0)	175.1 (1.1)	171.2(-0.3)	175.0(-0.1)
교육서비스업	151.1 (-1.2)	150.6(-0.3)	149.9(-1.3)	150.4(1.0)	151.7(1.2)	152.4(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2.0(-1.7)	175.2(-0.1)	168.9(-1.8)	173.3(-1.1)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0.6)	158.0(-0.1)	157.6(-0.2)	162.9(2.5)	158.4(0.5)	161.5(-0.9)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8.0(-0.7)	170.9(2.8)	162.6(-3.2)	166.7(-2.5)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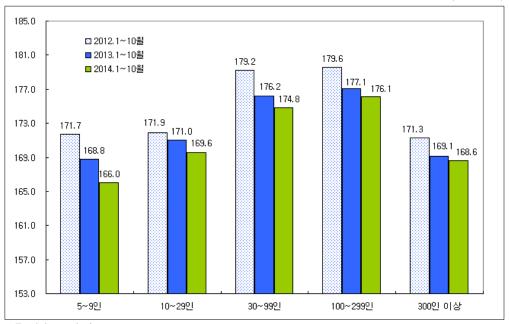
- 2014년 10월 근로시간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6%), 건설업(-1.6%), 운수업(-1.5%) 등에서 감소함.
 - 2014년 10월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0%)이며, 교육서비스업(1.3%), 금융 및 보험업(1.0%)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10월 평균 근로시간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10월 교육서비스업(1.2%), 금융 및 보험업(0.6%), 여가관련서비스업 (0.5%), 제조업(0.4%)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 동평균 대비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4년 10월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

- 2014년 10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76.1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71.0시간을 기록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기간평균(1~10월) 근로시간 추이

(단위:시간)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0%,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
- 한편 2014년 1~10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 5~299인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171.3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한 168.6 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2014년 1~10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6.0시 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7%,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6시간으로 전 년동평균대비 0.8%,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8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0.8%,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886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762건)보다 124건 높은 수치임.
- 지난 12월 조정성립률 55.1%
 - 지난 12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5.0%에 비해 9.9%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
 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3년, 2014년	12원	주정사거	전수	민	처리내연벽	혀화
---------------------	-----	------	----	---	-------	----

	접수 첫	처리		조정성립		-	조정불성	립	행정	취하		조정
	건수	건수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지도	철회	진행중	성립률
2014. 12	886	864	401	169	232	327	43	284	45	91	22	55.1
2013. 12	762	739	414	252	162	223	71	152	34	68	23	65.0

자료:중앙노동위원회,「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86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450건)보다 64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4.6%(124건), 기각·각하· 취하비율이 65.4%(234건)를 차지함.

〈표 12〉2013년, 2014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진행중
2014. 12	386	358	117	7	79	41	114	0	27
2013. 12	450	418	181	4	56	41	136	0	34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노동계 반발

-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와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지난달 16일 의결했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단계 정상화대책이 과다부채와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양적방안이었다면,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의결된 2단계 정상화대책은 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기관장과 임직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질적 방안으로, 핵심은 인력과 사업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임.
 -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는 7년 미만 근속자와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업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입도 검토됨.
 -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 저성과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는 올해 내로 저 성과자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나 하위 5%, 10% 같은

- 비율을 정하지 않을 방침임.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운영의 경쟁효율화 차 원"이라며 "노조가 있어 악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성과부진자 퇴출이 고용불안으로 직결되는 데다, 단체협약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려움.
-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전문계약직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추진하고, 올해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총 85개 기관을 우선점검대상에 올려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에 나섬.
- 기재부가 발표한 기능점검・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은 2월에 열리는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다룰 의제이며, 공공부문발전위가 다루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공공부문발전위 논의는 물론이고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노동계가 반발함.
 -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이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을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다는 것은 공공부문발전위뿐만 아니라 노사정위 전체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함.
 - 이어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앞세워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민감한 노동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면 총연맹 차원에서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함.
 - 한 공공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2월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와 2진 아웃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돈의 노예로 경쟁시켜 매년 해고하겠다는 악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정부가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이런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만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힘.

◈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상여금시행세칙에 따라 고정성이 결여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16일 현대차지부 소속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5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함.

- 지금의 현대차는 1999년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현대차서비스가 합병한 회사로 1994년 제정된 옛 현대차의 상여금시행세칙은 현대정공 출신 노동 자에게는 확대 적용됐지만, 현대차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음.
- 재판부는 상여금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 옛 현대차 · 현대정공 출신 원고들에 대해 "일정 근무일수(15일)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전체 23명의 원고 중 옛 현대차 · 현대정공 출신 18명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고, 각종 수당을 재산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상여금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원고 5명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현대차서비스 출신도 영업직이냐 정비직이냐에 따라 판단이 상이했음.
 - 재판부는 미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해 현대차서비스 영업직 출신 원고 3명의 청구를 기각하며 "현대차는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시간 또는 하루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연장수당 명목의 급여를 고정금액으로 정해 매월 지급했다"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힘.
 - 재판부는 정비직 원고 2명에 대해서 정비직의 경우 영업직과 달리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점에 주목하였으나, 생산직에 비해 연장근로시간이 턱없이 짧은 정비직의 특성상 이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할 3년치 소급분은 각각 389만 7.683원과 22만 89원에 그침.
 - 재판부는 "이를 감안했을 때 현대차서비스 출신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상여 금을 포함하더라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가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배척함.

◈ 현대자동차 노사, '유럽형 임금체계' 현지 실사

○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합의하기로 한 지난해 임금교섭 별도합의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사와 전문가들이 유럽 국가의 임금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실사에 나섬.

- 현대차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편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 기업(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을 방문하고 임금 문제 전문가를 만나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위한 임금제도를 조사함.
-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선 문제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외 선진업체의 임금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종업원들의 고용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함.
- 노사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임금체계·통상임금개선위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임.

◈ 조선업계 불황 여파, 조선소 노사갈등 심화

- 수주 감소와 실적 악화로 조선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빅3 조선소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
 -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전체 조합원 5천482명을 상대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 반투표에서 조합원 4천441명이 참여해 3천848명이 찬성(찬성률 86.6%) 의사를 밝혀 가결되었음을 발표함.
 -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를 넘겨 가며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히 목표달성격려금(PI) 지급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노동자협의회는 "92년 PI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줄곧 고정화된 임금으로 지급됐는데, 회사는 지난해 PI를 TAI(생산성목표인센티브)로 변경하고 지급액을 절반으로줄였다"고 반발하고 있고, 반면 회사 측은 "기업 차원에서 결정되는 임금지급방식은 노사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교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통상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어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노조가 지난달 12~1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 참여 조합원 96.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어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21일부터 단체행동이 가능함.
 -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진통 끝에 12월 31일에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안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 66.47%의 반대로 부결됨.

-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에 의한 실적 부진에서 비롯된 조선업계의 노사갈등은 고용문 제까지 동반하는 모습임.
 - 지난해 사상 최대의 부진을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사무·관리직 1천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적자를 낸 플랜트사업본부를 해양사업본부에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임.
 - 삼성중공업은 판교와 거제 본사 사이의 인력 재배치를 진행 중이며, 이미 지난해 11월 이후 거제 본사의 설계인력 400여 명을 판교 R&D센터로 이동시킴.
 - 대우조선해양은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교육시설 운영법인 에프엘씨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등 비핵심 부문에 대한 정리에 나섰음.

◆ LG디스플레이, 질식사고 사상자는 협력업체 근로자

- LG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공장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4명이 다친 가운데, 노동・안전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원청인 LG디스플레이의 안전조치 위반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함.
 - 사고가 난 작업장은 대형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만드는 진공 밀폐공 간이며, 유리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질소로 채워져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없 고, 질소가스를 제거한 후 유지 보수 작업이 가능함.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정부당국은 원청인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에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시설 가동,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업 분야 사고예방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금까지 후속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LG디스플레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장소인 E3공장이 속한 P8 공장에 대해서는 종합진단을 받도록 명령함.
 -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고현장을 두 차례나 직접 둘러본 후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 해 E3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안 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함.
 - 또한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씨앤앰 노사,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 씨앤앰 노사가 해고자 복직과 임금 단협협약에 합의하여 6개월에 걸친 씨앤앰의 정 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 50일째에 접어들었던 파이낸스센터 옥외전광판 고공농 성이 결실을 맺게 됨.
 -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잠정합의안 설명 및 토론'을 거친 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09명 해고직 복직및 고용안정 등 4대 요구 잠정합의안'에 대해 87.6%가, '2014년 임단협 체결안'에 대해서는 86.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힘.
 - 합의안에 따르면 씨앤앰은 협력업체 해고자 109명 중 이직·전직자 등을 제외한 83명을 구내망 유지보수 전문 신규업체에 근속승계하는 방식으로 채용해 관련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근속승계에 따라 이들은 해고 전 경력과 임금수준을 보장받게 됨.
 - 또한 노사는 신규업체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씨앤앰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하고, 회사 매각 과 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하는 고용보장 방안에도 합의함.
 - 이어 노조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각각 집중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첫 단체협약에는 노 조활동 보장과 적정업무 보장이 명시됨.
 - 씨앤앰노조 지부장은 "원직복직이 아닌 복직이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씨앤앰 관계자는 "어렵게 합의한 만큼 노사가 앞으로 남은 복직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함.

◈ 쌍용자동차. 흑자전환하면 해고자 단계적 복직

- 마힌드라그룹의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 린 쌍용차의 신차 티볼리 발표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 직은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된 뒤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마힌드라 회장은 "제가 즉흥적으로 복직을 결정한다면 이는 5천 명에 달하는 쌍용차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딜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티볼리가 선전하고 쌍용차가 흑자로 돌아서면 순차적으로 필요

- 에 따라 인력을 충원할 것이고, 그 인력은 2009년 실직자 중에 뽑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차 발표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마힌드라 회장이 해고자들의 피어린 신발과 굴뚝을 외면하고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고자들과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함.
-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고통받아 온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티볼리가 생산될 때 국민은 쌍용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 며 "쌍용차 경영진의 대승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힘.

◆ 서울동부지법,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

-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2013년 2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 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고용의무가 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7년 6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노동자는 공사 직원으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계약한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이어 "요금수납원들의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 업무이고, 용역계약 또한 그 목적 또는 대상이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할 정 도로 특정됐거나 전문성·기술성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법원은 특히 "외주업체 운영자들이 자신이 고용해 업무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와 임금 범위까지 도로공사가 사전에 정해 놓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함.
 - 소송을 제기한 전국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되거나 계약을 반복해 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라도 직 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함.
 - 외주업체에 소속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징수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인해 전국 334개 사업장에 7천300명이 산재해 있는 만큼 비슷한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됨.

◆ 고용노동부,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 산재인정'

○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

에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외의 교통편을 이용해 노동자가 출퇴근하다 다칠 경우 산 재보험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었음.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근로 복지공단은 자가용이나 택시・이륜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음.
- 공단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산재보험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낼 정도로 출퇴근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왔음.
-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노사정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험료 부담과 자동차보험회사와의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쟁점이 될 전망임.
-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던 탓에,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노동계가 오랜 시간 요구해 왔음.
 -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를 규정하겠다"고 밝힘.
 - 앞으로 산재보험법과 시행령에 고객응대 노동에 따른 질환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함.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건 '제자리걸음'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와 수원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등 9곳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체결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단체협약이 개별 센터 사용자들의 불이행으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함.
 -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부터 임금·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 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에 조인하여, 기존에 100%

건당수수료 체계로 운영돼 온 협력업체 임금지급방식을 매월 기본급 120만 원으로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 등의 임금·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기준단협에 포함함.

- 기준단협은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거나 쟁의권을 가진 40여 개 분회에 일괄 적용됨.
- 지회에 따르면 노조사무실 설치비용 1억 원, 지회 전임자급여, 업무에 필요한 작업공구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고, 또한 기준단협에 의해 지급돼야 할 업무차량 유류비와 주차비 등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협력업체 사용자들이 지회 간부나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한다거 나,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말 송년회를 진행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노 사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한 지회관계자는 "협력업체 뒤에 숨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한 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KL]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